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산학겸임교사 등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규정 〉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25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산학겸임교사 등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규정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태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1. 28.
3. 회 부 일 : 2025. 12.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강사 등의 채용에 있어 제한사유나 결격사유는 「교육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과후학교 또는 민주시민교육 등 학교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강사 등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강사 등에게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적용된다는 것과 위반 시 제재조치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 등은 교육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Ⅲ. 검토의견

1. 산학겸임교사 등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산학겸임교사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산학겸임교사 등이 교육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 ----- ----- -----등 (이하 “산학겸임교사등”이라 한다)을-----. ----- ----- ----- -----.

<u><신 설></u>	<u>② 산학겸임교사등은 교육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③ 산학겸임교사등은 제1항 후단에 해당하거나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④ 산학겸임교사등의-----</u> <u>-----</u> <u>-----</u> <u>-----.</u>

나. 검토의견

- 「대한민국헌법」은 제31조제4항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교육기본법」은 제1장 총칙에서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교육기본법」은 제2장 교육당사자에서 교원에 대하여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도 적용됨.¹⁾

□ 산학겸임교사 등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교원 외’로 두고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²⁾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등에서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를 적용하여 정당 등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³⁾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예시)’에도 정치 운동 금지 조항 등의 적용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채용 기관의 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⁴⁾

1)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어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일부 규정은 적용받지 않고 있으나,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및 제84조(정치 운동죄),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및 제82조(정치 운동죄)에 대한 적용 제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각 시·도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참고

* 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2025. 2., p. 50. 등

4) 각 시·도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중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예시)’ 참고

* 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2025. 2., p. 85. 등

제11조(복무) ① “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 조항]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기본법
제1장 총칙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교육당사자 제14조(교원) ⑤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84조(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단,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계약해지 가능)

10.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2조(정치 운동죄) ① 제5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실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완장·복식 등을 제작·배부·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 이와 같이 산학겸임교사 등은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등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용 기관의 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해당 내용이 법률에 규정될 경우, 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준수 의무가 보다 명시적으로 확인되고 모든 국·공·사립학교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제22조제3항에서 ‘산학겸임교사등은 제1항 후단에 해당하거나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당 조항은 산학겸임교사등이 (제1항 후단)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 학교 교원의 임용 제한,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거나, (제2항) 정치적 중립성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가 산학겸임교사등과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조문은 산학겸임교사등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산학겸임교사등이 제1항 후단에 해당하거나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당 조항은 산학겸임교사등의 계약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령은 산학겸임교사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 운영 근거, 임용 제한 또는 결격사유 준용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산학겸임교사 등의 세부적인 구분, 임용권자, 임용절차, 수당지급, 임용기간, 임용 범위 등을 규정하며, 시·도교육청 운영 지침 등에서 복무, 계약 해지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현행법령 체계가 상이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정치적 중립성 준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정치적 중립성 준수 의무 위반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정치적 중립성 준수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교 현장에서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마련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개정안 제22조제3항은 정치적 중립성 준수 위반 이외에도 산학겸임교사등이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후단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제4항 및 제5항 등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제한, 결격사유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 등이 제한되므로, 추가적으로 해당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할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임.

[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한 임용 등 제한 조항]

구분	임용 등 제한 조항 내용
산학겸임교사 등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u>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u>
국·공립 학교 적용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u>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u>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12.1.26.> 2. 금품 수수(授受)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국·공·사립 학교 적용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u>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구분	임용 등 제한 조항 내용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사립 학교 적용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공· 사립 학교 적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교 교육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으로, 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해 교육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시 조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함.
- 다만, 교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임용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계약해지 사유로 다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은 삭제가 필요함.

○ 충청북도교육청: 신중검토

- (안 제22조제2항) 산학겸임교사 등도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당연히 적용되므로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은 불필요함.
- (안 제22조제3항) 정치적 중립의 기준은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념이 모호하고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이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할 경우 산학겸임교사 등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의 외부 전문가 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됨.

문 의 처

02)6788-5192